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·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[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(「소방기본법」,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,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,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」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)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]
 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		과태료 금액(만원)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	2회	3회	4회 이상	
가. 삭제 <2022. 11. 29.>						
나. 삭제 <2022. 11. 29.>						
다. 삭제 <2022. 11. 29.>						
라.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경우		50	100	150	200	

마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 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 으로 알린 경우		200	400	500	500	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,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		500				
사.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 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		100				
아.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3항	50	100	100	100	
자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 동구역을 출입한 경우	법 제56조제2항 제4호	100				
차.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 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경우		200				